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88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4.

발 의 자 : 김 윤 · 김원이 · 백혜련
이수진 · 서미화 · 박홍배
박주민 · 임미애 · 김우영
이훈기 · 남인순 · 정혜경
김남근 · 윤건영 · 김승원
오세희 · 한창민 · 권칠승
김교홍 · 최혁진 · 이재강
이용선 · 정일영 · 한준호
이광희 · 송재봉 · 조인철
김남희 의원(2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급종합병원을 ‘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최종 진료거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.

최근 ‘응급실 뺑뺑이’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,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최종치료와 응급의료체계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, 권역응급의료센터, 권역외상센터, 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, 응급·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4제1항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4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서 권역응급의료센터, 권역외상센터, 전문응급의료센터 중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것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4(상급종합병원 지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 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 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 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3조의4(상급종합병원 지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<u>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서 권</u> <u>역응급의료센터, 권역외상센</u> <u>터, 전문응급의료센터 중 하</u> <u>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것</u>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